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

제1조(설치) 우량잠종의 생산, 보급 및 잠종, 상묘, 잠건의 검사업무를 관장하고 도민의 잠업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잠업검사소(이하 '잠업검사소'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잠업검사소의 주소재지는 청주시 방서동 100번지에 두되 사업목적상 별개의 사업장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잠업검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우량 잠종 및 상묘의 생산, 검사
2. 중앙잠업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
3.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업기술원의 양성
4. 잠종제조의 지도감독
5. 잠병 및 상묘병충해의 예방
6. 잠건의 기계검사
7. 잠종, 상묘, 잠건 및 생사의 생산비 조사
8. 기타 잠업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소장) ① 잠업검사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6조(초빙강사) 잠업기술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제6조에 의한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강습생의 숙식제공) 강습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잠종장조례 및 충청북도농어촌
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